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535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영석

피고B

변론 종결2021. 6. 16.

판결 선고2021. 7. 21.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62,928,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화학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9. 4. 5. 농산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과, 익산시 D에 폐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C, 수급인 원고, 계약금액 4억 4,000만 원(계약금 1억 3,200만 원, 중도금 2억 2,000만 원, 잔금 8,8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9. 4. 20.부터 같은 해 8.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6.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위 폐수처리시설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억 3,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6. 4.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E은 그 무렵 위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7. 31. 기준으로 약 90%의 공정률을 달성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대금은 95,989,662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이다. 그 밖에 원고가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해 투입한 공사대금은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 대금 50,732,800원, 기타 작업 대금 5,800,000원 상당인데, C으로부터 위 기성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원고는 C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5544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9.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6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6%의, 202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C은 2019. 7.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9. 7. 29.경 적극재산(1,600,514,200원)보다 소극재산(2,084,697,988원)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1,600,514,200원

익산시 F	창고용지	3,299	1,225,016,200	갑14
1	위 같은 곳 GH동	건물	759	13,662,000
2	I	답	-1,2갑16	
3	J	답	2,175	39,150,000
4	K	임야	1,046	162,686,000
5	위 같은 곳	건물	201	
6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130,000,000
7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30,000,000	-1,2갑19
8				-1,2
합계	1,600,514,200			

2) 소극재산: 2,084,697,988원

1	기술보증기금	243,860,496	갑20
2	L	536,651,398	
3	(유) M	150,000,000	
4	N (주)	102,906,017	
5	(주) O	9,957,460	
6	P (주)	142,582,084	갑21갑22
7	(유) Q	37,859,000	
8	N (주)	628,131,533	
9	R 조합	65,000,000	
10	원고	167,750,000	
합계	2,084,697,988		

[인정 근거] 갑 제1~11, 14~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거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 공사계약)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7,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7. 29.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62,68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도 162,686,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위 162,68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62,6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인민

별지